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9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민병덕・맹성규・송재호

윤준병 • 이규민 • 이동주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장경태 · 정찬민 · 조오섭

천준호・최종윤・허 영

홍성국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 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 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 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 제8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1조의2제2항 및 제67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① |
| |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 |
| | 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
| |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 |
| | 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 |
| | 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 |
| | 를 요구할 수 있다. |
| | ②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
| |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 |
| | 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 | 을 알려야 한다. |
|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
| |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 |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7조(사업) ① ~ ⑥ (생 략) | 제67조(사업) ① ~ ⑥ (현행과 |
| | 같음) |
| <u> <신 설></u> | ⑦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대출 |
| |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제31조의 |
| |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
| | <u>"중앙회"로 본다.</u> |
| 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 | 제8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
| 략) | 같음) |
| <u><신 설></u> | <u>④ 제31조의2제2항 및 제67조</u> |

제7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 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금고 또 는 중앙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